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3. 12 선고 2020가단274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]

전 문

원고A(개명전 : B)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3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3. 10. 20. 접수 제397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[청구의 표시]

-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

○ 무변론판결

판사김장구

별지